



대 구 지 방 법 원

제 5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노1421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검 사	송미루(기소), 윤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혜경(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4. 8. 선고 2024고단54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제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이하 ①죄라고 한다)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8. 그 판결(이하 ①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이하 ②죄라고 한다)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3. 6. 16. 그 판결(이하 ②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이하 ③죄라고 한다)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3. 6. 16. 그 판결(이하 ③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 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범행일은 ①판결 확정일 전이고,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제2죄의 범행일은 ①판결 확정일과 ②, ③판결 확정일 사이이다.

②죄의 범행일은 ①판결 확정일 전이고, ③죄의 범행일은 ①판결 확정일 이후이다.

나. 판단

1)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와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제2죄 범행일 사이에 2018. 6. 8. 확정된 ①판결이 있으므로, 원심 판시 각 죄 전부 상호 간에 아니라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제2죄 상호 간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와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제2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원심 판시 제1의 가죄는 2018. 6. 8.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①죄, 2023. 6. 16.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②죄와,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제2죄는 2023. 6. 16.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된 ③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①죄, ②죄와,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제2죄에 대하여는 ③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3) 원심은 판시 각 죄 전부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공지능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을 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제 1의 가죄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①죄,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②죄와,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제2죄는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된 ③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호 _____

 판사 최운성 _____

 판사 박치봉 _____